

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

사업장 (훈련기관명)	사업장관리번호								
	명 칭					대 표 자			
	소재지					(전화번호:)			
지원신청액	원								
지급결정액 세부 명세	훈련 과정명	훈련기간	지원금 내역						
			지원 인원	지원금 총액	도제식 현장교육 훈련비	사업장 외 교육훈련비	숙박비	식비	훈련장 려금
계									

미지급(일부지급)사유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(○○지역본부·지사)

직인

안내사항

1.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FAX번호()